

## 2023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추진계획 일부 변경

구 분	당 초	변 경	변경 사유
II.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2. 사업세부추진요령 ○ 신청기간 ○ 대상자 선정방법	○ 2023. 2. 10(금) 18:00까지 ○ 통합쇼핑몰 대상자 추천 시스템으로 대상자 선정	○ 추가신청 : 2023. 2. 13 ~ 2. 26 ○ 사업량 초과 시 통합쇼핑몰 대상자 추천 시스템으로 선정 ※ 신청 인원 미달 시 선정 방법 - 신청 기간 내본 신청 및 추가 신청) 신청 적격자는 전원 대상자 선정	사업량(315명) 대비 신청 인원 미달

# 2023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

## I. 사업개요

### 1. 목적

-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시민건강, 환경보전, 친환경 농산물 재배 면적 확대를 도모하기 위함

### 2. 지원근거

-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, 제7조, 제55조
- 저출산·고령화사회기본법 제9조, 제10조

### 3. 추진방향

- 임산부와 영아에게 균형 있는 친환경 영양소 공급
-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친환경 농산물 확대 도모

## II.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### 1. 사업개요

- 사업량 : 315명
- 사업비 : 151,200천원(시비 120,960, 자부담 30,240)
  - 지원비율 : 시비 80%, 자부담 20%
- 지원단가 : 480,000원/1인당(자부담 9만6천원)
- 사업내용 : 임신부터 출산·이유기까지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지원

### 2. 사업 세부 추진 요령

○ 신청 기간 : 2023. 1. 30.(월) 10:00 ~ 2. 10.(금) 18:00

※ 추가 신청 기간 : 2023. 2. 13.(월) 10:00 ~ 2. 26.(일) 24:00

#### ○ 지원자격 및 요건

-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(이하 ‘통합몰’)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 검증 결과 임산부로 확인된 자 또는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

다른 출생증명서, 임신·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(보건복지부고시 제2019-136호)에 따른 임신·출산확인서, 산모수첩 등을 발급받은 임신부

-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

(주민등록상 김천시 관내 주소 거주자)

※ 자격 증빙 서류

구분	거주지 확인	임신·출산 여부 확인
임신	주민등록등본 (3개월 내 발급본)	<택1> ① 임신확인서 ② 산모수첩 사본(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면) ③ 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
출산		<input type="checkbox"/> 산모와 아이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(택1) ① 출생증명서 ② 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③ 출생신고된 주민등록등본
		<input type="checkbox"/> 산모와 아이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(택1) ① 출생증명서 ② 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③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
		<input type="checkbox"/> 2022년 출산하고 출생신고일이 2023년일 경우(택1) ① 출생증명서 ② 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③ 주민등록등본(발급 시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하여 선택발급)
외국인	<택1> ①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②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③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지방세납세증명서	상동

-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(영양플러스)의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80% 이하인 임신부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

## ○ 지원 신청 및 접수

- (지원신청) [통합쇼핑몰\(www.ecoemall.com\)](http://www.ecoemall.com)을 통해 온라인 신청

- 통합쇼핑몰([www.ecoemall.com](http://www.ecoemall.com)) 중 지원사업 소개 - 신청방법 메뉴에서 지원신청서 작성 → (회원정보입력) 회원자격검증(행안부 비대면자격검증 등)을 통해 신청서에 작성된 이름,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임신부 관리시스템으로 전송

- (수혜대상 검증) 통합(쇼핑)몰 온라인 신청 시 건강보험관리공단 시스템과 연계된 임신·출산 정보 등과 대조하여 적격성 확인

- 적격성이 확인된 사업 신청자 명단을 보건소에 제공하여 영양플러스 사업 수혜 여부 등 중복수혜 검증

## ○ 대상자 선정 방법 및 선정 통보

- (선정 방법) 사업량 초과 신청 시 통합쇼핑몰 대상자 추첨 시스템으로 대상자 선정  
※ 신청 인원 미달 시 선정 방법

- 신청 기간 내(본 신청 및 추가 신청) 신청 적격자는 전원 대상자 선정

- (선정 통보) 이메일 또는 문자로 선정 통보 및 공급업체 쇼핑몰 회원가입 안내

## ○ (임산부 회원가입) 선정된 임신부는 공급업체 온라인 쇼핑몰 회원가입 진행

- 사업 포기자는 당해 연도 및 이후 동일 임신 또는 출산으로 재신청 불가

- ※ 다른 아이 임신 또는 출산 시는 신청 가능

## ○ (대상자별 사업종료 기준일) 사업 지원기한은 2023년 12월 15일까지이나

지원기한이 도래하기 전 지원대상자의 지원금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을

사업종료 기준일로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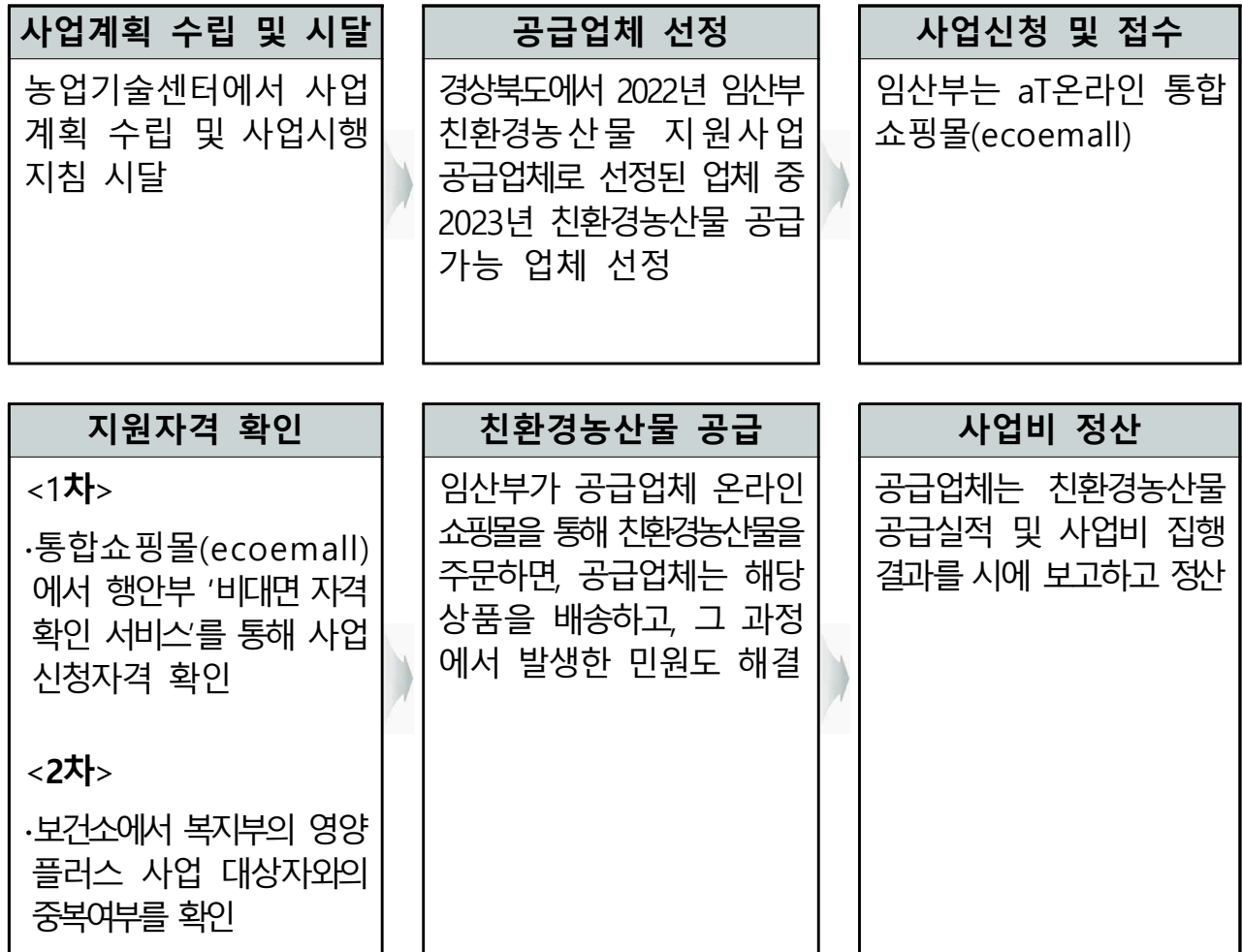
## ○ 지원 품목 등

-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기농수산물·무농약농산물,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유기가공식품, 같은 법 제5호의 2에 따른 무농약 원료가공식품 등
- 임산부의 필요와 기호를 반영하여 품목을 직접 선택하여 주문하거나, 이미 구성된 꾸러미 상품, 정기 공급 프로그램 등도 이용 가능

## ○ 지원 방식

- 임산부(임신부+출산부)에게 친환경농산물,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배송 및 공급
- (공급업체 선정)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제작 및 공급 능력을 갖춘 광역 유통업체 선정
  - ※ 도 지정 업체 중 2023년 친환경 농산물 공급 가능 업체 선정
- (지원신청) 임산부는 친환경농산물 쇼핑몰([www.ecoemall.com](http://www.ecoemall.com))에 온라인으로 신청 이후 자격 검증 및 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
- (주문 및 배송) 임산부는 공급 업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여 원하는 상품을 주문 후 결제하고 공급업체는 꾸러미 상품을 제작하여 임산부에게 지체없이 배송

○ 사업 시행 체계



○ 공급제품의 품질관리

- 임산부의 기호와 정서에 맞게 제철 과일·채소 등 다양한 종류로 구성하되, 신선도 유지를 위해 신선도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배송 및 품질관리
- 꾸러미 품질 및 안전성 관리는 생산단계부터 보관·포장, 배송 등 전체 과정에서 시행
-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상품 제작 및 제공을 위해 「별표1」의 공급조건을 준수하여야 함
  - 공급업체는 꾸러미 상품에 이상(배송착오, 변질 등)이 있거나 품질에 문제가 발생 시, 교환 및 환불 등 즉각 처리
  - 특히, 안전성 검사 결과 잔류농약이 검출되었고 해당 농산물이 임산부에게 공급된 경우 즉시 임산부에게 고지하고 교환 및 환불 실시 후 해당 조치 사항을 김천시에 보고(발생일 후 5일 이내)

## ○ 제재 및 보고

- 공급업체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조건, 위생 및 안전 관리 등 관리 미흡, 공급 계약 시 준수사항 위반 등 발생 시 **공급계약을 중단**하거나 향후 참여 대상에서 배제
  - \* 공급업체는 농산물을 다룰 때 식품위생법에 따라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 27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
- 친환경농산물에 잔류농약 검출 등 인증기준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 의뢰

## 3. 행정 사항

- 읍면동장은 사업 추진 계획에 의거 홍보 철저
- 업무 담당자는 신청 메뉴얼 숙지하여 온라인 신청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인이 있을 경우 통합쇼핑몰 접속 방법 및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
- 신청 시작일(30일) 동시 접속으로 사이트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착순 대상자 선정이 아님(추첨 방식)을 적극 홍보

## 별표 1

## 공급업체 준수사항

이 준수사항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사업 공급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, 공급 계약의 일부로서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내용에 따라 공급계약 중단 및 차기 공급업체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.

1. 공급업체는 친환경인증 제품만을 공급하여야 하며, 선별·세척·포장 등의 과정은 인증받은 작업장(위탁사업장 포함)에서 이루어져야 함
2. 공급업체 제품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품 표시 규정에 따라 표시사항이 정확히 표기되어야 함
3. 공급업체는 제품 입고 시마다 표시사항과 납품서 등을 통해 친환경인증 제품인지를 확인하고, 점검기록과 제품 입·출고 자료 등을 보관해야 함
4. 공급업체는 잔류물질(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) 검사 대상, 검사 주기, 검사 방법 등이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을 세워 이행하여야 함
5. 공급업체는 자체 품질관리 계획에 따라 제품에 대한 잔류 물질 검사를 실시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공급해야 함
6. 공급업체는 제품 공급과정에서 잔류물질 검출 등 부적합 제품이 확인될 시 공급을 즉각 중단하고, 해당 제품을 회수·폐기하는 한편, 임산부에게 교환·환불·보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. 또한, 조치 후 3일 이내 그 결과를 김천시에 보고해야 함
7. 공급업체는 상품 공급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, 민원 내용·발생 원인·조치 결과 등을 기록해두어야 함
8. 공급업체는 사업점검 기관의 자료 요구, 현장점검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